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전: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3 월 15 일

3. 정정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50 조(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협회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4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④ 협회는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전: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3 월 15 일
3. 정정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추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운용자산 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전: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17 년 3 월 15 일
3. 정정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NH-Amundi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 Allset 러-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4. 투자실적 추이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